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와 그 소 속 기 관
직 제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 식의약 업계의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25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(4급 1명, 7급 1명)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9. 00. ~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) ① 처장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9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둔다.

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③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.

1. 식품·의약품 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(이하 “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”이라 한다.)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
2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·연구
3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 협력 등에 관한 사항
4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
5. 아시아-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회의 및 사무국 등 운영·관리
6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·운영
7. 그 밖에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

④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.

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의2]

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
정원표(제36조의2제4항 및 제36조의3제4항 관련)

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(존속기한: 2023년 12월 31일)

총계	10
일반직 계	10
4급 이하	10

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(존속기한: 2025년 9월 00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4급 이하	2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6조의3(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) ① 처장 밑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5년 9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둔다.</u> <u>②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.</u> <u>③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.</u> <u>1. 식품·의약품 등 안전 관련 수출지원(이하 “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”이라 한다.)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</u> <u>2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국제 동향에 관한 조사·연구</u> <u>3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외국 규제기관과 협력 등에 관한 사항</u> <u>4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련 규제선진화 및 글로벌 표</u>

준화 등에 관한 사항

5. 아시아-태평양 식품 규제기

관장 회의 및 사무국 등 운영·

관리

6. 식품·의약품 등 수출지원 관

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·운영

7. 그 밖에 식품·의약품 등 수출

지원 관련 국제 현안대응에

관한 사항

④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에 두

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

와 같다.

⑤ 별표 4의2의 직급별 정원은

총리령으로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8